

## 2021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[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대체인력] 채용계획 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(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대체인력)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1. 6. 28.

인천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



### 1.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예정 직무분야	채용등급	선발 인원	채용기간	직무내용
휴직·출산휴가자 등 대체인력	지방한시 임기제 9호 (9급 상당)	5명	채용일~ 2021.10.31.	일반행정분야 (주민등록민원, 사회복지 등)

※ 선발인원은 결원 등 사정에 의해 개인별 임용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.

※ 채용근무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2조에 따라 임용약정 해지 가능

### 2. 근거법령

- 『지방공무원법』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『지방공무원임용령』 제3조의 2(임기제공무원의 종류)
- 『지방공무원임용령』 제21조3(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절차 등)

### 3. 응시자격(기준일: 면접시험 예정일)

가. 공통사항(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)

-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결격사유)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65조(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○ 연령제한: 면접시험(최종시험일) 예정일 기준 18세 이상

\* 학력·성별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○ 시험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고,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는 자

▶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▶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선고를 받은 자

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보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

④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## 나. 직무분야 자격요건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
(경력증명서 제출)

- ※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(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)
- ※ 실무경력 인정범위 :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, 비상근,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
- ※ 실무경력인정 기준
  1. 전임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
  2.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
예)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→ 2년만 인정

## 4. 복무조건 및 보수수준

### 가. 복무조건

- 근무기간 : 채용일 ~ 2021. 10. 31.
- 근무시간 : 주 35시간(09:00~17:00 근무, 12:00~13:00 중식시간)
- 복무기준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준용

### 나. 보수수준

-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에 따름

구 분	월 기본금액	비고
지방한시임기제 9호	1,473,850원	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수당 별도 지급

## 5. 선발방법(서류전형 → 면접시험)

### 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

**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(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**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, 자질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
**다. 기타사항**

-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10일간 재공고함.
-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
  - \* 1차 공고시 기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재공고 응시 원서접수자로 같음함.
-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평점점수 소숫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합격자 결정

**6. 시험일정**

모집공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면접시험	최종합격자발표
2021. 6. 28.(월) ~ 7. 8.(목)	2021. 7. 6.(화) ~7. 8.(목)	2021. 7.19.(월)	2021.7월중	2021.7월중

- ※ 채용공고는 서구청 홈페이지(seo.incheon.kr) 채용소식란에 공고
- ※ 면접 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함께 기재 예정
- 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**7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**

가. 원서교부 :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

나. 접수기간 : 2021. 7. 6.(화) ~ 7. 8.(목) \*공휴일 제외

다.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인천 서구청 총무과 인사팀) 또는 등기우편 접수

라. 응시원서 접수처

- 방문접수 : 서구청 총무과[인사팀]

- 우편접수 : (22726)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 서구청 총무과 인사팀
- 마. 우편접수시 유의사항
-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
  - 우체국 통상환증서(응시수수료 상당) 동봉
  - 응시표 이메일 송부 예정 ☞ 응시원서 이메일 주소 기재
  - 응시표는 면접시험 참석 시 출력하여 지참
  -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담당자(☎032-560-4102)를 통해 접수 확인을 위한 전화 요망

## 8. 제출서류

### 가. 응시원서 1부 <별지서식 제1호>

- 응시수수료 : 5,000원 [인천 서구 수입증지 날인(서구청 1층 민원봉사과 판매)]

### 나. 이력서 1부 <별지서식 제2호>

-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불가

### 다.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<별지서식 제3호, 제4호>

- A4용지 1~2매 내외, 경력 중심으로 작성

### 라.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)

-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,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만 인정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하고,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[http://www.nhic.or.kr] 발급) 등 자료 첨부
  - ※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,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
  - ※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불인정

### 마.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)

### 바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<별지제5호서식>

## 사.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.<별지제6호서식>

### 아.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<별지제7호서식>

#### ≥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
-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에 한하며(자격증 제외),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) 내의 서류이어야 함.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.

## 9. 기타사항

- 가.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출서류,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(각종 증명서)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이 가능합니다.
- 나.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10일간 재공고함.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 
\* 1차 공고시 기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재공고 응시원서 접수자로 같음함.
- 다.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라.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마. 상기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- 문의 : 총무과 인사팀(☎ 032-560-4102)